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4. 6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	담당자	• 팀장 박준상, 사무관 이성훈 • ☎ (044) 201-4770, 4756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6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6.(금) 12:00 이후 보도 가능	

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

-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제출(3.29)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그간의 법률 자문, 교통전문가·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첫째,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,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입니다.
-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“택시요금”의 하나로 인식됩니다.
- * 기존 전화·앱 호출료 : 승객→기사→콜 운영자에게 요금(운임+콜수수료)을 전달
 카카오 유료서비스 : (콜수수료) 승객→콜 운영자(카카오) / (택시운임) 승객→기사
- 따라서,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,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*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*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호출료를 1,000원으로 규정(단, 서울시는 00~04시 2,000원)
- 둘째,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, 출·퇴근,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높습니다.

-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,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

□ 이상의 입장을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(4.5)하였습니다.

□ 다만, 제도상으로는 현행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·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,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·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

-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유상으로 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개정 법률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.

□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특정 지역·시간의 택시부족, 단거리 승차 거부 등 국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

- 앞으로 전문가, 이용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택시산업과 새로이 출현하는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상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